

전자문서 보관방법에 따른 법적효과 비교

□ 전자거래기본법령 적용사항

구분	자 체 보 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보관						
정부지정	•지정·허가·등록·인가 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법인이 신청 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2) •지정기준 요건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기술인력</td> <td>일정요건을 갖춘 인력 12인 이상</td> </tr> <tr> <td>재정능력</td> <td>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td> </tr> <tr> <td>시설·장비</td> <td>송신·수신, 보관·증명 설비 등</td> </tr> </table> 	기술인력	일정요건을 갖춘 인력 12인 이상	재정능력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	시설·장비	송신·수신, 보관·증명 설비 등
기술인력	일정요건을 갖춘 인력 12인 이상							
재정능력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80억원 이상							
시설·장비	송신·수신, 보관·증명 설비 등							
정부의 관리감독	•정부의 관리·감독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관이 시정명령·지정취소·과징금·과태료 부과 (법 제31조의4, 제31조의5, 제46조) •자료제출, 보고, 현장조사 가능(법 제31조의11) 						
이용자 정보보호	•의무사항 없음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 부과(법 제31조의13)						
배상책임 보험	•의무사항 없음	•이용자의 손해에 대비하여 20억원 이상 보험가입 의무화(법 제31조의16)						
시설장비 관리	•별도 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 검사 실시 (법 제31조의10, 제31조의11) -전자적 침해행위, 외부인의 출입통제, 재해 대비 조치 등 •원격지 저장설비 구축 의무화[삼중백업]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47호 제22조) 						
운영인력 자격	•자격요건 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법 제31조의3) •정보통신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와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12인 이상 근무 필요 						

구분	자 체 보 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보관
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처벌 규정 없음 •공무원 의제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전소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직무상 알게된 정보의 누설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법 제44조제2호) •공전소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범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중하게 처벌(법 제44조)
문서보관 요건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 보관되었음을 문서보관자가 입증책임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전자문서의 보관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법 제5조①②, 제31조의6)
전자문서 위·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문서의 위·변조여부를 문서보관자가 입증책임 부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인증서 유효기간(1년) 이후에 전자문서의 유효성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문서 보관기간 중 그 내용이 변경(위·변조) 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법 제31조의7①)
보관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보관자가 보관사실/작성자/수신자/송수신 일시가 진정함에 대한 입증책임(증명책임)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문서 보관관련 증명가능, 증명서 발부 및 증명서 내용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 (법 제31조의7②)
작성자증명		
수신자증명		
송신/수신 일시증명		

* 추정과 간주

구분	개 념	의미	반복 가능성
추정 (推定)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어림 짐작	반대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추정력이 반복될 가능성은 있음
간주 (看做)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자가 그 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 할지라도 그것 만으로는 반복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발생시키는 것	맞다는 확신	반증을 들어서도 반복할 수 없는 것(사실의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음)

□ 전자문서 장기보관시의 차이점

구 분	자 체 보 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WORM	공인인증서 WORM 타임스탬프	공인인증서 WORM 시점확인
본인확인				
무 결 성	○	○	○	○
부인방지				
유효기간(기본)	공인인증서 1년 (인증기관)	공인인증서 1년 (인증기관)	타임스탬프 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없음 (법에서 보관기간 동안 진정한 것으로 추정)
유효기간(연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필요없음
데이터 보안 (기밀성)	○	○	○	○ (암호화, 접근통제)
WORM 보관	×	○	○	○ (3중으로 보관)
시점확인/검증	×	×	△ (3년이내 추가로 타임스탬핑)	○ (법에서 보관기간 동안 진정한 것으로 추정)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유효성검증	×	×	△ (3년이내 추가로 타임스탬핑)	○ (법에서 보관기간 동안 진정한 것으로 추정)
개별법령의 자체보관 의무	개별법령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의 보관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개별법령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의 보관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개별법령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의 보관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부합 (법에서 개별법령에 의한 보관으로 간주)
증명주체	자체적으로 증명	자체적으로 증명	자체적으로 증명	공전소 증명서 발급 (법에서 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

* 공인인증업무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2009.9월)에서 시점확인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은 (1024bit: 3년 이내, 2048bit: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